|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은 문제 순서대로 작성할 것  2. 계산문제는 계산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  3. 답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원단위까지 작성할 것  (예 : 2,000,000 - 1,000,000 = 1,000,000원)  4.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관련 자료·증빙의 제출 및 신고·납부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가정할 것 |

**【문제 1】(24점)**

다음은 거주자 갑, 을, 병 및 정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물음 1)** 거주자 갑의 2018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1>과 같을 때 갑의 종합소득에 합산될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및 배당가산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
|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  |

|  |
| --- |
| **<자료 1>**   1.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이익: 4,500,000원(이자 2,000,000원, 배당 1,500,000원, 상장주식 처분이익 1,000,000원으로 구성됨) |

|  |
| --- |
| 2.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5,000,000원   3.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3,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4. ㈜A의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결산확정일: 2018년 2월 20일): 1,600,000원   5. ㈜B가 자기주식소각이익(2015년 6월 5일에 소각하였으며,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함)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B로부터 수령한 무상주의 액면가액: 10,000,000원(시가는 12,000,000원임)   6. 사업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금전대여로 인해 수령한 원금 초과액 및 수수료: 2,000,000원(원천징수 되지 않음)   7.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1,400,000원   8. 2014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중도해지 환급금: 15,000,000원(납입보험료 총액은 12,000,000원임) |

**(물음 2)** 거주자 을은 2018년 6월 30일까지 ㈜A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1일부터 ㈜B의 영업직 사원으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을의 2018년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2>와 같을 때 ㈜A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B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을이 2017년에 ㈜A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은 20,000,000원이다.

(답안 양식)

|  |  |
| --- | --- |
| ㈜A 총급여액 |  |
| ㈜B 총급여액 |  |

|  |
| --- |
| **<자료 2>**   1. 을이 ㈜A로부터 받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월 1,500,000원): 9,000,000원   ② 자격수당(월 100,000원): 600,000원   ③ 상여금: 1,000,000원   ④ 식사대(월 150,000원)\*1: 900,000원   \*1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2: 800,000원   \*2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상여금으로서 잉여금처분결의일은 2018년 2월 25일임   ⑥ 연장근로수당: 2,800,000원   ⑦ 을의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교육보험의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 금액: 3,000,000원     2. 을이 ㈜B로부터 받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월 1,000,000원): 6,000,000원   ② 영업수당: 5,000,000원   ③ 식사대(월 200,000원)\*3: 1,200,000원       \*3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음   ④ 자가운전보조금(월 250,000원)\*4: 1,500,000원   \*4 을의 소유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⑤ 연장근로수당: 800,000원   ⑥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 인해 얻은 이익: 3,000,000원   ⑦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한 금액(월 80,000원): 480,000원   ⑧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2,000,000원 |

**(물음 3)** 거주자 병의 2018년 기타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자료 3>과 같을 때 병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기타소득(분리과세대상 포함)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  |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

|  |
| --- |
| **<자료 3>**   1. 고려시대 골동품의 양도로 받은 금액: 80,000,000원(5년 보유 후 양도하였음)     2. 공익사업과 관련없는 지역권의 대여로 인해 받은 금품: 25,000,000원(지역권의 대여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는 22,000,000원임)   3. ㈜C의 2017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시 기타소득으로 병에게 처분된 금액: 6,000,000원(결산확정일: 2018년 2월 24일)   4. 일시적으로 잡지에 원고를 기고하고 6월 30일에 받은 원고료: 2,500,000원   5. 주택매수자가 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5,000,000원   6. 연금계좌에서 이연퇴직소득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연금외수령한 금액: 8,000,000원 |

**(물음 4)** 거주자 정(45세, 남성이며 배우자 없음)의 2018년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내역이 <자료 4>와 같을 때 아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4>**   1. 종합소득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이자소득금액 | 15,000,000원 |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으로  구성됨 | | 배당소득금액 | 21,650,000원 | 배당가산액  1,650,000원 포함 | | 근로소득금액 | 28,750,000원 | 총급여액  40,0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19,750,000원 |  | | 종합소득금액 | 85,150,000원 |  |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 분 | 나 이 | 소 득 | 비 고 | | 부친 | 72세 | 1,200만원 | 작물재배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임 | | 모친 | 68세 | 없음 | 2018년 3월 사망 | | 누나 | 46세 | 총급여액 500만원 | 장애인임 | | 장녀 | 15세 | 없음 | 기숙사 생활로 별거하고 있음 | | 차녀 | 5세 | 없음 |  |    3. 보험료 등의 납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4,000,000원   ② 보험회사에 개설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5,000,000원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1,500,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고용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납입액: 300,000원   ⑤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납입액: 900,000원   ⑥ 누나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300,000원   4. 의료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의 질병치료비용: 2,000,000원   ② 모친의 입원치료비용: 5,000,000원   ③ 누나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3,500,000원   ④ 차녀의 맹장염 수술비용: 800,000원  5. 종합소득세율(일부)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 |

**<요구사항 1>**

거주자 정의 인적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기본공제액 |  |
| 추가공제액 |  |

**<요구사항 2>**

거주자 정의 특별소득공제액과 연금보험료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특별소득공제액 |  |
| 연금보험료공제액 |  |

**<요구사항 3>**

거주자 정의 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및 배당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종합소득공제는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일반산출세액 |  |
| 비교산출세액 |  |
| 배당세액공제액 |  |

**<요구사항 4>**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신청한 거주자 정의 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액공제액은 전액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보험료 세액공제액 |  |
| 의료비 세액공제액 |  |

**【문제 2】(6점)**

다음은 거주자 갑의 주택A 양도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갑의 주택A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  |
| 기타의 필요경비 |  |
| 양도차익 |  |
| 양도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주택A(등기된 주택임)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양 도 일 | 2018. 6. 5. | | 취 득 일 | 2012. 9. 8. | | 실지양도가액 | 1,200,000,000원 | | 실지취득가액 | 불분명 | | 양 도 비 용 | 6,500,000원 | | 자본적지출액 | 4,000,000원 |      2. 주택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다.   3. 갑은 시가가 1,500,000,000원인 주택A를 특수관계가 있는 ㈜K에게 양도하였다.   4. 주택A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며,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주택A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200,000,000원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800,000,000원이다.   6. 양도비용은 주택A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며, 자본적지출액은 주택A의 리모델링 비용이다. 양도비용과 자본적지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7. 보유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이다. |

**【문제 3】(32점)**

**(물음 1)** 다음은 ㈜동해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자 료 >**  1. ㈜동해는 2018년 3월 6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A은행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 ㈜동해는 2018년 4월 6일 A은행 차입금 100,000,000원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신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시가: 6,000원)를 A은행에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차입금 100,000,000 (대) 자 본 금 5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  3. ㈜동해의 제17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제 5기 발생분:   10,000,000원  ② 제10기 발생분:     5,000,000원\*  \* 합병시 승계받은 결손금임  ③ 제17기 발생분: 20,000,000원  4. ㈜동해는 2018년 5월 6일 A은행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무상증자 직전의 ㈜동해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며, 자기주식은 없다.  5. A은행은 ㈜동해가 2018년 7월 6일 주당 9,000원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동해 주식 2,200주를 반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19,800,000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19,800,000 |

**<요구사항 1>**

<자료>의 1번∼3번을 이용하여 ㈜동해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요구사항 2>**

<자료> 4번과 5번의 무상증자 및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A은행이 행하여야 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2)** 다음은 ㈜서해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구분 | 이자율 | 이자비용 | 차입금 | 차입금적수 | | ① | 8% | 16,000,000원 | 2억원 | 730억원 | | ② | 6% | 8,926,027원 | 3억원 | 543억원 | | ③ | 4% | 6,049,315원 | 3억원 | 552억원 |   ① 회사채이자로서 금융회사를 통해 채권자에 지급되었으며, 이자비용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입기간: 2016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② A은행 차입금으로 당기에 상환한 운영자금 차입금이다.  (차입기간: 2016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③ B은행 차입금으로 당기에 신규로 차입한 운영자금 차입금이며, 이자비용에는 기간경과 분 미지급이자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입기간: 2018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2. ㈜서해는 2017년 10월 1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00,000,000원(시가 6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동 자동차와 관련하여 당기 중 감가상각비 20,000,000원(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가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구분 | 지급일 | 금 액 | 대여금 적수 | | ① | 2018.3. 7. | 100,000,000원 | 300억원 | | ② | 2018.6.15. | 30,000,000원 | 60억원 | | ③ | 2018.9.23. | 36,500,000원 | 36.5억원 | |

|  |
| --- |
| ①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한편 당기 말 현재 대표이사로부터 별도의 상환 약정 없이 차입한 차입금(가수금 적수는 154억원임)이 있다.  ② 학자금 대여액으로 사용인에게 자녀학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③ 주택자금 대여액으로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동 대여금과 관련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수익 4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4. ㈜서해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5. ㈜서해는 A은행 및 B은행과 특수관계가 없다. |

**<요구사항>**

㈜서해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3)** 다음은 ㈜남해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일 자 | 구 분 | 금 액 | | 3.15. | 이재민 구호금품 | 20,000,000원 | | 5.10. | 사립대학교 장학금 | 15,000,000원 | | 7.20. |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 30,000,000원 | | 9.12. | 영업자단체 협회비 | 10,000,000원 |   ① 이재민 구호금품은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에게 자사제품(시가 30,000,000원)으로 기부한 것이다.  ② 사립대학교 장학금은 대표이사의 모교인 사립대학교에 약속어음(결제일 2019년 1월 20일)으로 기부한 것이다.  ③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를 현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④ 영업자단체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납부한 회비이며, 특별회비 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남해는 2018년 10월 1일 보유하고 있던 건물(취득가액 4억원, 감가상각누계액 2억원, 상각부인액 1억원)을 10년간 회사가 사용수익 하는 조건으로 대표이사의 향우회에 기부하고 건물의 시가인 5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남해는 동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10,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남해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50,000,000원, 법인세비용은 52,000,000원이다.  4.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 다른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

**<요구사항 1>**

제18기 차가감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당기순이익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 1) ……  2) ……  ⋮ | ⨯⨯⨯  ⨯⨯⨯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1) ……  2) ……  ⋮ | ⨯⨯⨯  ⨯⨯⨯  ⋮ |
| 차가감소득금액 | ⨯⨯⨯ |

**<요구사항 2>**

제18기 차가감소득금액이 25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부금 해당액과 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법정기부금 해당액 |  |
| 지정기부금 해당액 |  |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미달)액 |  |

**(물음 4)** 다음은 ㈜백두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
| --- |
| **< 자 료 >**  1. ㈜백두는 2017년 4월 1일 착공한 본사사옥을 당기 중 준공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본사사옥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18년 10월 1일이다.  ① 본사사옥의 건설을 위하여 2017년 3월 1일 A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연 이자율 6%로 차입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전액 상환하였다.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전액 각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② 제18기 중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위 차입금 중 100,000,000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③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의 일시예치로 인한 수입이자는 제17기 5,000,000원, 제18기 3,500,000원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이자수익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④ 본사사옥의 건설원가 10억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본사사옥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15,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⑤ 본사사옥에 대한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신고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2. ㈜백두는 2018년 1월부터 신제품 개발을 시작하여 2018년 10월 1일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 1일부터 신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① 개발비 지출액 전액(5억원)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발비 지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개발비 지출액 | | 개발부서 인건비 | 250,000,000원 | | 개발관련 재료비 | 100,000,000원 | | 개발부서 관리비 | 150,000,000원 |   ② 개발부서 재료비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되어야 할 소모품비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개발부서 관리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동 손해배상액은 신제품 개발과 무관한 일반관리비이며,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다.  ④ 개발비의 상각기간을 5년으로 신고하였으며, 개발비 상각비 14,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요구사항 1>**

<자료> 1번을 이용하여 ㈜백두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편의상 월할계산하는 것으로 하며,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요구사항 2>**

<자료> 2번을 이용하여 ㈜백두의 제18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 --- |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  |  |  |  |

**(물음 5)** 다음은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말에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절차에 착수한 ㈜한라의 청산소득 관련 자료이다. ㈜한라의 청산소득금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잔여재산가액 |  |
| 자 기 자 본 |  |
| 청산소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  | | --- | --- | --- | --- | | 현 금 | 50,000,000 | 부채 | 200,000,000 | | 재 고 자 산 | 200,000,000 | 자본금 | 100,000,000 | | 기 계 장 치 | 100,000,000 | 이익잉여금 | 50,000,000 | | 합  계 | 350,000,000 | 합 계 | 350,000,000 |   2. ㈜한라는 재고자산과 기계장치를 다음과 같이 환가하였으며, 부채는 200,000,000원에 상환하였다.  ① 재고자산: 250,000,000원  ② 기계장치: 80,000,000원  3. ㈜한라의 제18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① 재고자산 평가감: 10,000,000원  ② 기계장치 상각부인액: 20,000,000원  4. ㈜한라는 2017년 10월 15일 자본잉여금 20,000,000원을 자본금에 전입하고 무상주 4,000주를 발행하였다.  5. ㈜한라의 제18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 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제6기 발생분 : 50,000,000원  ② 제15기 발생분: 70,000,000원  6.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문제 4】(8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제18기 사업연도(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세액이 발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정시 배제순서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180,000,000원이며, 과세표준도 동일하다.   2. 위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대상 익금불산입액 120,000,000원이 차감된 금액이다.   3.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구 분 | 금 액 | | 당기 발생분 | 20,000,000원\*1 | | 전기 발생분 | 10,000,000원\*2 |   \*1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2%임  \*2 전기 발생분은 소급하여 4년간 연평균발생액보다 적음   4. 외국납부세액은 12,000,000원이다. ㈜갑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선택하였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은 104,550,000원이다.   5. 적격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가 1,000,000원 있다.   6. 최저한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7%   ② 비중소기업: 10% |

**(물음 1)** ㈜갑이 중소기업일 경우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갑의 제18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정답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갑의 제18기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금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
| 총부담세액 |  |

**(물음 2)** ㈜갑이 비중소기업일 경우(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며, 중견기업이 아님)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요구사항 1>**

㈜갑의 제18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요구사항 2>**

<요구사항 1>의 정답이 1,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갑의 제18기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상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금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
| 총부담세액 |  |

**【문제 5】(14점)**

**(물음 1)** 다음은 ㈜갑과 ㈜을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1 >**   1. ㈜갑은 5월 1일 거래처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상품A\*1와장기할부조건부로 상품B\*2를 판매하였다. 동 일자에 대금 수령 없이 상품A는 10,000,000원, 상품B는 20,0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10개월 수령 조건  \*2 5월부터 매월 초 1,000,000원씩 20개월 수령 조건   2. ㈜갑은 은행차입금 10,000,000원을 보유 중이던 건물C(시가 10,000,000원)로 변제하였으며,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D(시가 13,000,000원)로 조세를 물납하였다.   3. ㈜갑은 기계장치E(시가불분명)를 거래처 기계장치F(시가불분명)와 교환하였다. 기계장치E와 F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구 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 기계장치E | 11,000,000원 | 12,000,000원 | | 기계장치F | 13,000,000원 | 14,000,000원 |    4. ㈜갑은 6월 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G와 H를 수용당하고 각각 80,000,000원과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건물G는 ㈜갑이 철거하는 조건이고, 건물H는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는 조건이다.   5. ㈜갑은 상가건물I를 다음의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5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충당하였다.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65%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계약기간 | 2018. 4. 1.∼2020. 3. 31. | | 월임대료 | 1,000,000원(매월 말 지급) | | 임대보증금 | 40,000,000원 | | 특약사항 | 임대료 미지급시 다음 달 1일 보증금에서 충당 |   **< 자 료 2 >**  ㈜을은 6월 1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100,000,000원에 일괄양도하였다. 자산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며, 각 자산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단위: 원) | | | | | 구 분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감정가액\* | | 토지 | 45,000,000 | 40,000,000 | 54,000,000 | | 건물 | 15,000,000 | 20,000,000 | 18,000,000 | | 기계장치 | - | 20,000,000 | 18,000,000 | | 합계 | 60,000,000 | 80,000,000 | 90,000,000 |    \* 2018년 6월 30일 기준 감정가액임 |

**<요구사항 1>**

<자료 1>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자인 ㈜갑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 |
| 자료번호 | 과세표준 | 세 율 | 매출세액 |
| 1 |  |  |  |
| … |  |  |  |
| 5 |  |  |  |

**<요구사항 2>**

<자료 2>를 이용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을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해야할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은 60%,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비율은 70%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매출세액 |
|  |  |  |

**(물음 2)** 다음은 ㈜대한과 ㈜민국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대한은 햄버거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4월 1일∼6월 30일)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입내역   |  |  | | --- | --- | | 구 분 | 매입가액 | | 돼지고기 | 10,000,000원 | | 소고기 | 20,000,000원\* | | 채소 | 4,000,000원 | | 소금 | 1,000,000원 | | 설탕 및 조미료 | 2,000,000원 | | 수돗물 | 1,040,000원 |   \* 소고기는 수입산이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20,000,000원, 관세는 1,400,000원임   ② 돼지고기 사용내역     |  |  |  | | --- | --- | --- | | 구 분 | 당기매입분 | 전기이월분 | | 햄버거제조 | 8,000,000원 | 1,000,000원 | | 거래처증정 | 1,000,000원 | 500,000원 | | 기말재고 | 1,000,000원 | - | | 계 | 10,000,000원 | 1,500,000원 |    2. ㈜민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과세기간 | 기간구분 | 과세  공급가액 | 면세  공급가액 | | 2017년 제1기 | 1. 1.∼3. 31. | 4.8억원 | 5.2억원 | | 4. 1.∼6. 30. | 5.2억원 | 4.8억원 | | 2017년 제2기 | 7. 1.∼9. 30. | 5억원 | 5억원 | | 10.1.∼12.31. | 5.8억원 | 4.2억원 | | 2018년 제1기 | 1. 1.∼3. 31. | 5억원 | 5억원 | | 4. 1.∼6. 30. | 7억원 | 3억원 | | 2018년 제2기 | 7. 1.∼9. 30. | 7억원 | 3억원 | | 10.1.∼12.31. | 7억원 | 3억원 |   ① 건물A를 2017년 1월 1일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4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

|  |
| --- |
| ② 기계장치B를 2018년 7월 1일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한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년 11월 1일 1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

**<요구사항 1>**

㈜대한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할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제1기 과세기간의 햄버거공급과 관련된 과세표준은 500,000,000원이며, 제1기 예정신고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1,000,000원인 것으로 가정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
| 전기 의제매입세액 공제분 추징액 |  |

**<요구사항 2>**

㈜민국의 건물A와 기계장치B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금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정산 및 재계산의 경우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면 (+), 감소시키면 (-) 부호를 금액과 함께 기재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건물A | 금액 |
| 201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 |  |
| 2017년 제2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액 |  |
| 2018년 제1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액 |  |
| 2018년 제2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액 |  |

|  |  |
| --- | --- |
| 기계장치B | 금액 |
| 2018년 제2기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2018년 제2기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정산액 |  |

**【문제 6】(6점)**

다음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갑의 2018년 거래내역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의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공급대가: 30,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10,000,000원이고, 2,200,000원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됨)  ② 매입세액: 2,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은 1,0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1,000,000원임)  ③ 면세농산물 매입액: 2,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은 1,000,000원이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1,000,000원임)   2. 2018년 7월 1일 현재 보유자산 현황   |  |  |  |  | | --- | --- | --- | --- | | 구 분 | 취득일자 | 취득가액\*1 | 시 가 | | 원 재 료 | - | 1,100,000원 | 2,000,000원 | | 기계장치 | 2017. 12. 1. | 불분명\*2 | 10,000,000원 | | 건 물 | 2017.  2. 1. | 44,000,000원 | 50,000,000원 |   \*1 취득가액은 일반과세자가 매입한 경우 공급가액,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경우 공급대가로 봄  \*2 기계장치는 관련 증명서류의 분실로 인하여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확인되지 않음   3. 과자 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의 비율로 가정한다.   |  |  | | --- | --- | | 2017년 이전 | 2018년 | | 10% | 20% | |

**(물음 1)** 간이과세자 갑의 2018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 제외) 및 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 제외) | |  |
| 세액  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
| 의제매입세액공제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말 것) |  |

**(물음 2)** 간이과세자 갑의 2018년 부가가치세 재고납부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재고납부세액 |
| 원 재 료 |  |
| 기계장치 |  |
| 건 물 |  |

**(물음 3)** 사업자 갑이 2018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고, 일반과세자 갑의 2018년 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구 분 | 재고매입세액 |
| 원 재 료 |  |
| 기계장치 |  |
| 건 물 |  |

**【문제 7】(10점)**

**(물음 1)** 거주자 갑이 상속받은 ㈜대한의 주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상속받은 주식 수는 70,000주이며, 상속개시일은 2018년 7월 1일이다.   2. 12월말 비상장법인인 ㈜대한은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아니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대한의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 100억원 | 50억원 |    ①  자산 총계에는 개발비 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세무상 영업권 평가액 500,000,000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  부채 총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 8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금추계액의 50%에 해당한다.   4. ㈜대한의 총 발행주식수는 2010년 설립 이후 변동없이 100,000주이다.   5. ㈜대한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사업연도 | 내 역 | | 2017년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650,000,000원  - 국세 환급금 이자: 5,000,000원  - 당해연도 법인세 등: 150,000,000원 | | 2016년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580,000,000원  - 접대비 한도초과액: 20,000,000원  - 당해연도 법인세 등: 110,000,000원 | | 2015년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70,000,000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15,000,000원  - 당해연도 법인세 등: 80,000,000원 |    6. 순손익가치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10%이다. |

**<요구사항 1>**

상속재산인 ㈜대한의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다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대한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자산가치만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안 양식)

|  |  |
| --- | --- |
| 1주당 순자산가치 |  |
| 1주당 순손익가치 |  |
| 1주당 평가액 |  |
| 비상장주식평가액 |  |

**<요구사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차이에 대해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물음 2)**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인 ㈜갑은 2018년 3월 2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제시하고 납세의무자별로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산출세액을 답안 양식에 따라 계산하시오.

(답안 양식)

|  |  |  |
| --- | --- | --- |
| 납세의무자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료 >**     1. ㈜갑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다.   2. ㈜갑의 주주 구성 및 실제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주주 | 관계 | 지분비율 | 실제배당 | | A(70세) |  | 40% | 20억원 | | B(45세) | A의 아들 | 10% | 30억원 | | C(18세) | B의 딸 | 5% | 90억원 | | D(60세) |  | 30% | 30억원 | | E(30세) | D의 딸 | 5% | 20억원 | | ㈜F |  | 10% | 10억원 | | 합계 |  | 100% | 200억원 |      3. A, B, C, D, E는 모두 거주자이며, ㈜F는 영리 내국법인이다. A와 D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율(일부)   |  |  | | --- | --- | | 과세표준 | 세 율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 끝 -**